

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▶ **상품명** :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
- ▶ **상품특징** :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무원, 대체복무요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예금

2 거래 조건

☞ **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(2025.11.25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병역의무수행자로서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어를 지급받고 있는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전환복무자(의경, 해양의경, 소방원), 사회복지무원, 대체복무요원 -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-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이상 -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원본 제출 (단, 비대면 신규 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를 제출) ※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 ID(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'자격검증정보', '자격검증확인'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※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어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(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, 공중보건 의사, 공중방역수의사, 공익법무관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예술체육요원, 승선근무예비역 등)는 가입 대상이 아님
상품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정기적금 (자유적립식)
가입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 단위(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 내 월간 불입한도 최대 30만원) ※ 단,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은행의 한도합산 매월 55만원 초과 적립불가하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 설정 및 입금 가능 ※ 만기일 전일까지만 입금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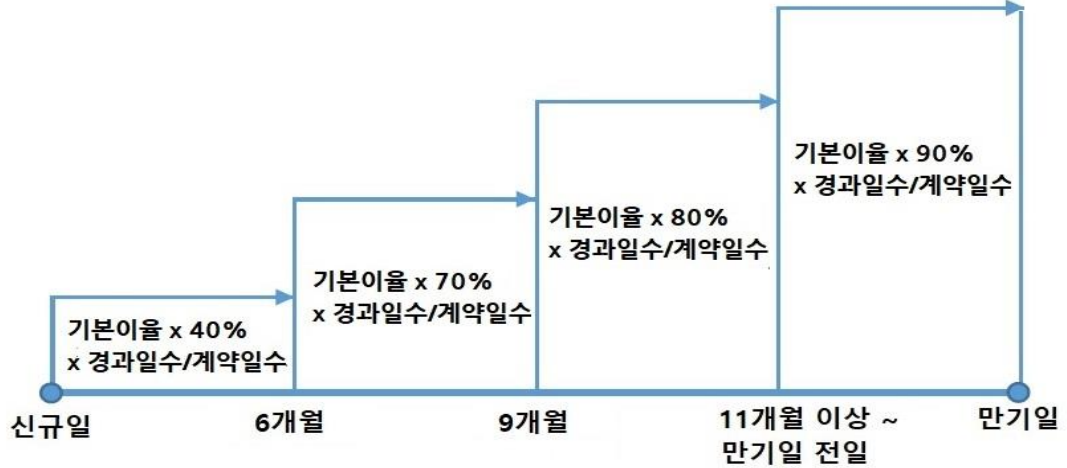
<p>계약기간</p>	<p>■ 1개월 ~ 24개월 (일 단위) ※ 전역일자 초과 가입 불가하며, 대체복무요원의 가입기간도 최대 24개월 ※ 전역일자가 이 적금 가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 불가</p>												
<p>거래방법</p>	<p>■ 신규 : 영업점, 모바일뱅킹 ■ 해지 : 영업점, 모바일뱅킹 ※ 단, 비대면 신규 및 해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만 가능 ※ 조기전역, 복무변경(현역/상근예비역↔사회복무요원), 신분전환(병↔간부), 금융소득종합과세자, 중도해지의 경우 비대면 해지 불가</p>												
<p>이자지급시기</p>	<p>■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</p>												
<p>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</p>	<p>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</p>												
<p>기본이율</p>	<p>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 이율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2 757 1437 969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기본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자유적립식</td> <td>1개월이상 6개월 미만</td> <td>연 3.0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 12개월 미만</td> <td>연 3.50%</td> </tr> <tr> <td>12개월이상 15개월 미만</td> <td>연 4.00%</td> </tr> <tr> <td>15개월이상 24개월 이하</td> <td>연 5.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	기본이율	자유적립식	1개월이상 6개월 미만	연 3.00%	6개월이상 12개월 미만	연 3.50%	12개월이상 15개월 미만	연 4.00%	15개월이상 24개월 이하	연 5.00%
구 분		기본이율											
자유적립식	1개월이상 6개월 미만	연 3.00%											
	6개월이상 12개월 미만	연 3.50%											
	12개월이상 15개월 미만	연 4.00%											
	15개월이상 24개월 이하	연 5.00%											
<p>우대이율</p>	<p>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■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에 따른 우대이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2 1122 1481 1283"> <thead> <tr> <th>내 용</th> <th>우대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기해지시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)보유 고객</td> <td>0.10%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모든 우대 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, 이 적금에 다른 기준(다른 상품의 특약)에서 정한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</p>	내 용	우대이율	만기해지시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)보유 고객	0.10%p								
내 용	우대이율												
만기해지시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)보유 고객	0.10%p												
<p>만기이자 산출근거</p>	<p>■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 * 자유적립식 이자 계산 예시(지속 불입 가정 시)</p> <p>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$\text{입금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일수(납입일~만기일 전일)} / 365$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1회차 입금 $(\text{입금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}) / 365$</p> <p>2회차 입금 $(\text{입금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}) / 365$</p> <p>3회차 입금 $(\text{입금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}) / 365$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⋮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만기전일</p> </div>												

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 해지이율로 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(단, 최저이율은 0.01%)

예치기간	이율
6개월 미만	기본이율 x 4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기본이율 x 7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기본이율 x 8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11개월 이상 ~ 만기일 전일	기본이율 x 9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
(중도해지 이율 계산 예시)

중도해지 이율
및
산출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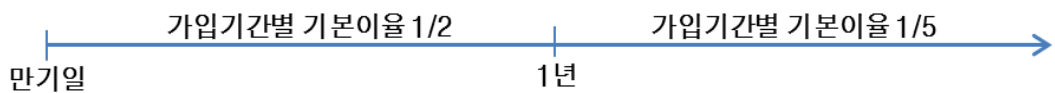


- ☞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일 당시 이 적금의 기본이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- ☞ 중도해지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한 세전 이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일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

만기후 이율
및
산출근거

- 만기후 1년 이내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/2
- 만기후 1년 초과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/5



연계·제휴
서비스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만기앞당김 지급

-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

자동이체

-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일별/주별/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(자동이체 등록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가능하며,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)

무통장거래

- 이 적금 신규시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계약해지방법

-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※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한하여 비대면 해지 가능
- ※ 조기전역, 복무변경(현역/상근예비역↔사회복무요원), 신분전환(병↔간부), 금융소득종합과세자, 중도해지의 경우 비대면 해지 불가
-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
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	
위법계약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
양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 통장의 양도는 불가합니다. 	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 통장의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 ■ 예금담보대출은 납입금액의 95%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 	
재예치	불 가	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분할인출	불 가	이 적금의 분할인출은 불가합니다.
세제혜택	가 능	<p>이 상품의 만기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.</p> <p>※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은 불가합니다. (단, 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 가능하며, 25.1.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</p> <p>※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. (단, 25.1.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합니다.)</p> <p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이 상품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/p> <p>※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(21.1.1 시행)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한하여,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/p> <p>※ 이 상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</p>

예금자보호여부

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3 1% 이자지원금

※ 1% 이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불가 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1% 이자 지원금이란?	<p>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</p> <p>※ 1% 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할 때 지급하는 은행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</p>
지급대상	<p>▣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,②,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<u>적금 만기해지</u></p> <p>② <u>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의 일치</u> ※ 단,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</p> <p>③ <u>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아래 확인서 중 택 1하여 원본 제출</u> 📄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</p> </div> <p>※ 단,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가능하며 현역병 당시 가입한 적금은 본인 희망시 만기일 이후에 만기해지 처리 가능</p>
지급금액	<p>▣ <u>적금 신규일부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%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</u></p> <p>※ 실제 예치일수 : 입금일부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</p> <p>※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</p> <p>⇒ 1% 이자지원금은 2023.12.31 납입분까지에 대해서만 지급</p>

<p>알아두실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도해지 계좌는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■ 적금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단,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앞당겨진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합니다. ■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 중 하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1%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시, 반드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‘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(택 1)’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단,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‘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확인서’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. ■ 만기 해지시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%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 ■ 1%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,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1%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 ■ 1%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(국방부, 병무청)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, 향후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	--

4 매칭지원금

※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,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(사회복무요원 外) 및 병무청(사회복무요원)에서 직접 지급됩니다. 따라서, 만기해지 후 순차적으로 만기해지일의 다음 월 중 입금되며, 입금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단, 역종변경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확인 후 현역병 가입 적금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구 분	내 용
매칭지원금이란?	<p>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</p> <p>※ 매칭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할 때 지급하는 은행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</p>
지급대상	<p>■ 이 적금 예금주로서 <u>아래 ①,②,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<u>적금 만기해지</u></p> <p>② <u>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의 일치</u> ※ 단,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</p> <p>③ <u>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아래 확인서 중 택 1하여 원본 제출</u> ☞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</p> </div> <p>※ 단,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가능하며 현역병 당시 가입한 적금은 본인 희망시 만기일 이후에 만기해지 처리 가능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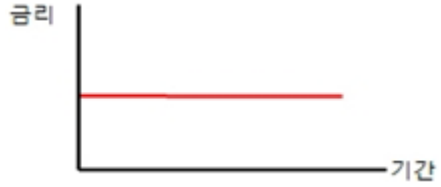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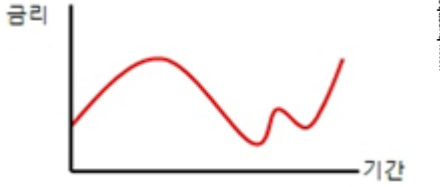
지급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‘적금 납입원금’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(2024.01.01 납입분부터 적용) ※ 입금금액건 별로 원 미만 절사 후 합산하여 산출 	
	납입기간	매칭지원금 계산방식
	2022.1.1~2022.12.31납입분	(건별납입원금 + 은행이자 + 1%이자지원금) * 33%
	2023.1.1~2023.12.31납입분	(건별납입원금 + 은행이자 + 1%이자지원금) * 71%
	2024.1.1이후 납입분	건별납입원금 * 100%

알아두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도해지 계좌는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■ 적금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단,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앞당겨진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합니다. ■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확인서 중 하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매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시, 반드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‘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(택 1)’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단,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하며 현역병 당시 가입한 적금은 본인 희망시 만기일 이후에 만기해지 처리 가능합니다.(매칭지원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완료 확인후 지급) ■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‘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’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. ■ 만기 해지시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 ■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01월 0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 특례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 ■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	---

5 유의 사항

- ▶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부산은행 고객센터(1588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----	------	------

운용형태		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정주기(3,6개월 등)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내용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
문의사항 및 민원상담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 참조	BNIK 부산은행
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	
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	
분쟁조정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	
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	
상품 개발부서	개인고객부	051-620-3328	